



왕촌어버이의집

장기요양이용계약 안내

2026년도 개정된 수가에 맞춘 입소안내서입니다.

1. 본 시설 이용 계약의 목적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말미암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장기요양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, 그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

②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

③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가구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보호가 필요한자

④ 관공서나 단체 등에서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위탁한 노인

⑤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의 생업활동에 지장을 주어 부득이하게 요양보호가 필요한 자.

2. 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. 단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쌍방 간에 별도 의 요청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갱신되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자동 연장됩니다.

3.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) 급여비용 :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'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'에서 규정하는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하며 당해 고시 비용이 변경될 경우 자동 적용합니다.

2) 비급여비용 : 비급여비용은 급여비용 외 비용으로서 식재료비, 간식비·미용비, 상급침실이용비, 병원치료비, 약제비, 기타실비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항목 및 적용 대상에 대하여는 입소계약 시 입소자(보호자)의 서면 동의를 얻어 가감합니다.

4.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·의무

① 입소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.

-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비롯한 일체의 필요한 자료를 시설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③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책임을 져야 합니다.
- ④ 주소의 변경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시설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⑤ 장기 출타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.
- ⑥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.

⑦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즉시 신병을 인수하여 장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 이를 거절할 경우 시설에게 위임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병을 처리합니다.

5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

-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때
- ③ 입소자가 2회 이상 이용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연체하였을 때
- ④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중증 치매나 성격 장애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⑥ 15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
- ⑦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경우
- ⑧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을 경우

왕촌어버이의집 입소 안내

◆입소대상자

- 1.치매,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-2등급 판정을 받으신분(나이제한없음)
- 2.장기요양등급 3-5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입소 판정을 받으신분

◆본인 부담금 산출표

(2026년도 1월 기준)

(단위:원)

분류	등급	1일요금	30일 요금	공단부담	본인부담	식비	본인부담금 합계
일반 대상자 (20%)	1등급	93,070	2,792,100	2,233,680	558,420	350,000	908,420
	2등급	86,340	2,590,200	2,072,160	518,040	350,000	868,040
	3-5등급	81,540	2,446,200	1,956,960	489,240	350,000	839,240
감경 대상자 (12%)	1등급	93,070	2,792,100	2,457,048	335,052	350,000	685,052
	2등급	86,340	2,590,200	2,279,376	310,824	350,000	660,824
	3-5등급	81,540	2,446,200	2,152,656	293,544	350,000	643,544
감경 대상자 (8%)	1등급	93,070	2,792,100	2,568,732	223,368	350,000	573,368
	2등급	86,340	2,590,200	2,382,984	207,216	350,000	557,216
	3-5등급	81,540	2,446,200	2,250,504	195,696	350,000	545,696

※상기표는 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매월 실제 급여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

※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(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2항 3호)

◆입소시 준비물

1	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(건강보험공단 발급)
2	입소자와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씩
3	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씩
4	건강진단서(또는 의사소견서) 1부(“결핵, 및 감염병 없음”을 확인하는내용-중요) 처방전과 복용약(2주정도)
5	재가서비스이용시 사용 했던 보장구 반납 (이용시 계약해지 요청) 개인소지품; 예)의류,신발,외출복,에어매트리스,에어방석,휠체어 등 ※현금, 귀금속은 (본인 절대 책임) 조건부 소지 가능합니다. 분실시 요양원은 책임 지지 않습니다.
비고	*외박, 입원 등 발생시 최대 15일, 연장10일 동안 본인부담금이 50% 청구됩니다. *입소 중 병원 진료약재비 및 입원비는 보호자 개별부담이며 외박 또는 입원기간 동안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비용은 장기요양보험법 수가기준에 의하여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.
상담 전화	041-856-3023 010-6412-9051 팩스 041-856-3053 주소 : 충남 공주시 구령고개길 12 / 왕촌어버이의집